

「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」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2. 25(화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3. 6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4. 3. 6(목) 제19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이상진)

가. 제안이유

-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 의식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문화군민운동의 정의(안 제2조)
  - “문화군민운동”이란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을 위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 분야별 우리군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.
  - “문화군민운동협의회”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.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주민 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○ 협의회 사업(안 제4조)

-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·추진
-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
- 강원도, 유관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
-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

○ 행정지원 등(안 제5조)

-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

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

2013년 8월 23일 창립된 『문화군민운동 협의회』 지원근거를

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차원의 문화군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추진기구인 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 2014년도 문화군민운동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“문화군민운동 홍보 및 홍보물 제작 10,000천원”, “읍면 문화군민의 날 운영 12,000천원”, “문화군민운동 협의회지원 10,000천원” 등 총32,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
그러나 협의회 지원조례 제정후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협의회 지원예산(10,000천원)이 편성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.

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《생략》

#### 5. 토론요지

《없음》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《없음》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건의사항 : 없 음
- 기타 특별한 사항 : 없 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1부

##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군민의식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의 문화군민운동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군민운동"이란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, 군민통합을 위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 분야별 우리군 민간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.
2. "문화군민운동협의회"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 지원 및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해 설립된 민간추진 협의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주민참여 및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협의회의 사업)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·추진
2. 군민의식 함양, 손님맞이 등 군민역량 결집을 위한 범 군민운동 전개
3. 강원도, 유관 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범 조성 추진
4. 그 밖에 문화군민 캠페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

제5조(행정지원 등) 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협의회가 문화군민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산보고 등)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